

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특송물품”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<u>법 제254조의2 제6항</u>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법 제254조의2제6항</u>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“개인 전자상거래물품”이란 사이버물을 통하여 물품의 정보가 제공되고 주문·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 중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띄어쓰기 오류 수정 ● ‘개인 전자상거래물품’ 정의를 규정 *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으로 개인이 통관의 직접적인 수요자가 됨에 따라 기존과 차등화 된 통관관리, 업무체계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9. <u>“통신판매자”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거나 자체 사이버몰의 운영을 통하여 화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</u></p> <p>10. <u>“구매대행업자”란 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11. <u>“배송대행업자”란 화주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	<p>품의 공급망 파악 및 통관상 역할 부여를 위해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정의 필요</p>
<p>제3조(등록요건)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등록요건) ----- ----- <u>법 제223조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31조제3항에 따른 등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용 변동은 없으며 특송업체 등록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상 자격 요건 규정 명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1. (생략)</p> <p>2.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(외국무역기·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)</p>	<p><u>특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 또는 -----</p>	
<p>제4조(등록신청)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류는 우편, <u>FAX</u>,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제3조</u>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<u>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</u> 사본</p>	<p>제4조(등록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팩스</u> ----- -----.</p> <p>1. 제3조<u>제2호</u>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<u>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</u> 사</p>	<p>● 「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2. <u>사업자등록증 사본(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)</u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본</p> <p>2. <u>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u></p> <p>3. 「국세징수법」 제107조제2항에 따른 <u>납세증명서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제6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삭제 • 법 제175조(결격사유)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이며,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세관에 서류 제출이 불가피
<p>제5조(등록갱신) ① 「<u>관세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31조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</p>	<p>제5조(등록갱신) ① <u>영 제231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문 정비 및 인용 조문 조항 수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6조(등록의 효력상실)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.</p> <p>1. <u>폐업신고를 한 때</u></p> <p>2. <u>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</u></p> <p>3. <u>영업중단 등의 사유로 특송업체등록증을 반납한 때</u></p>	<p>제6조(등록의 효력상실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법 제2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제224조의2의 ‘등록 효력상실’ 사유를 명시 1. 폐업 2. 사망 3. 유효기간 만료 4. 등록 취소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7조(특송물품의 반입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특송업체가 본사·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<u>송하인</u>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<u>통관지세관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<u>송하인·수하인</u>, 품명,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,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</p>	<p>제7조(특송물품의 반입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물품발송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----- ----- <u>물품발송인·물품수신인</u>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시행('21.1.1., 용어 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 • 띄어쓰기 오류 수정 • 법 시행('21.1.1., 용어 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.</p>	
<p>제8조(신고구분)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<u>상용건품</u>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(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)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(이하 "목록통관특송물품"이라 한다)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신고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<u>상업용 견본품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시행('21.1.1., 용어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

현행	개정안	비고
<p>1. <u>송하인이나 수하인</u>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1. <u>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</p>
<p>제11조의2(우범화물 선별검사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특송업체, <u>송하인, 수하인</u>, 출발지,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1조의2(우범화물 선별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---- <u>물품발송인, 물품수신인</u>, 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	<p>• 법 시행('21.1.1., 용어 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 발송인, 품명, 규격, 발송국,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선별기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 물품은 제외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범성이 없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검사생략 근거 마련
<p>제12조의2(스마트통관) ① 스마트 통관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중 <u>물품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면서 개인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등과 같이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</u> 적용대상으로 한</p>	<p>제12조의2(스마트통관) ① ----- ----- <u>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주문·결제 등 거래정보가 제출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공급망이 관여하여 수입되는 물품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액 제한을 삭제하여 스마트통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정보 제공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관여 물품으로 명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<신설></u></p>	<p>⑤ <u>관세청장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증개자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하려는 화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부호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이 주문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 부호의 유효성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검증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입력 지원
<p>제13조(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통관)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<u>특송업체 등록일 또는 제15조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</u></p>	<p>제13조(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통관) ① 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<u>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</u> ----- -----.</p> <p><조문이동> ※ 제2항제2호로 이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용에 변동은 없으며, 조문만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항은 자체시설에서 통관할 수 없는 물품의 종류를 열거하고 ②항은 자체시설 자격요건으로 구분 • ②항제2호로 조문 이동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2. 최근 1년간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‘개선대상업체’ 또는 ‘관리대상업체’로 평가받은 경우</u></p> <p><u>3. 특송물품이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의심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</u></p> <p>가. · 나. (생략)</p> <p><u>4. 그 밖의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·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<조문이동></p> <p>※ 제2항제3호로 이동</p> <p>1. ----- ----- --- <u>물품</u></p> <p>가. · 나. (현행 제3호 가목·나목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물품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	<p>• ②항제3호로 조문 이동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2. ~ 4.</u> (생략)</p>	<p><u>2. 특송업체 등록일 또는 제15조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</u></p> <p><u>3. 최근 1년간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‘우수업체’ 또는 ‘양호업체’로 평가받았을 것</u></p> <p><u>4. ~ 6.</u>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항 제1호에서 조문 이동, 문구 수정 : ‘지나지 않은 경우’를 ‘지났을 것’ • ①항 제2호에서 조문 이동, 문구 수정 : ‘개선 대상업체 또는 관리대상업체’를 ‘우수업체 또는 양호업체’ - 제22조 조항번호 변경사항 반영(제4항→제3항)
<p>제14조(자체시설 <u>운영</u> 절차 등) ①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	<p>제14조(자체시설 <u>이용</u>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 제258조의3(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) 조문 제목에 맞춰 수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1. (생략)</p> <p>2.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<u>제2호 및 제3호</u>의 요건은 구비계획 서류)</p> <p>3. · 4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세관 인력, 시설 현황,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관의 감시·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<u>60일</u> 이내(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)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이 적합한지를 특송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(<u>제4호 및 제5호</u> -----)</p> <p>3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3조 제2항 조문 이동에 따른 ‘호 번호’ 수정 • 영 제258조의3제2항에 서의 기간과 일치

현행	개정안	비고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
<p>제15조(자체시설 통관의 종료) 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송 물품의 자체시설 통관을 종료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3조제2항 <u>제4호</u>를 위반하여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5조(자체시설 통관의 종료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제6호</u>----- ----- ----- 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 제258조의3(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) 조문 제목에 맞춰 수정 • 제13조 제2항 조문 이동에 따른 '호 번호' 수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6조(특송업체 점검·관리)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(이하 "AEO고시"라 한다)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제외하고 AEO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1. · 2. (생략)</p>	<p>제16조(특송업체 점검·관리)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조항 삭제></u>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체시설 운영상황 점검은 AEO 공인업체 통관절차 혜택과는 무관 - AEO고시 [별표2, 통관절차 혜택]에도 자체시설 운영상황 점검 항목은 없음
제17조(특송업체 심사위원회)	제17조(특송업체 심사위원회)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3. 「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」 제5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</u> (생략)</p> <p>⑥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<u>시급을 요하는</u>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다.</p>	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3.</u> (현행 제4호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, <u>긴급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태료는 영 제265조의2에 따라 반드시 부과해야 하므로 심사위원회 심의가 불필요 법제처 주관 「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」 의견 반영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<u>1. 법 제175조(운영인의 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⑧ (생략)</p>	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. 법 제2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 제224조제1항제1호 : 거짓 등록한 경우는 당연 취소 대상으로 추가 - 법 제224조제1항제2호 : 운영인 결격사유(법 제175조 각 호)로 현행과 동일
<p>제18조(특송물품 보관·관리) 자체시설 통관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(특송물품 보관·관리) 자체시설 통관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검사대상 물품 <u><단서 조항 신설></u></p> <p>4. · 5. (생략)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. <u>다만, 물품을 검사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체시설 통관이 불가능한 ‘마약류, 총포·도검·화약류’를 세관지정장치장에 보관토록 규정 정비
<p>제22조(특송업체 차등관리) ① 세관장은 제21조 각 호의 이행사항과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,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, 시설·장비·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EO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‘수출입안전관리</u></p>	<p>제22조(특송업체 차등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송업체 평가는 AEO 공인업체 통관절차 혜택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우수업체'의 공인을 받은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AEO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세관장은 <u>제4항에</u> 따라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제3항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	<p>과는 무관</p> <p>- AEO고시 [별표2, 통관절차 혜택]에도 특송업체 평가 항목은 없음</p> <p>• 제2항 삭제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</p>
<p>제30조(행정제재)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</p>	<p>제30조(행정제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체시설에서의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최근 1년 내에 제29조에 따른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</u></p> <p><u>2. (생략)</u></p> <p><u>3. (생략)</u></p> <p><u>4. (생략)</u></p> <p><u>5. 법 제268조의2,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를 적용받아 법 제311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</u></p> <p>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1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u></p> <p><u>2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u></p> <p><u>3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</p> <p><u>4. 특송업체의 직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8조의2,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</u></p> <p>② -----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 (제1호)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입정지는 법 제2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범위 내에서 가능 • 조문 순서 정비 • ‘임원’의 경우는 법 제175조에 따라 당연취소 대상이므로 ‘직원 및 사용인’을 대상임을 명확히 명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을 일시 정지하거나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제8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견청취에 관한 절차는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른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거규정 명확화
<p>제33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9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<u>매3년</u>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2년 7월 1일</u> ----- ----- <u>매 3년</u>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검토기한 기준일자 재설정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2-00호 (2022. 0 0.00.)>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. 00. 00.일부 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4호 서식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적용례) 별지 제4호 서식 개정사항 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칙 마련
<p>[별표 1]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9. <u>적하목록</u>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</p> <p>10. 통관목록 중 품명·규격·수량·가</p>	<p>[별표 1]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적재화물목록</u> ----- ----- --</p> <p>10.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시행('21.1.1., 용어 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 • 법 시행('21.1.1., 용어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격·<u>수하인 주소지·수하인</u>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</p> <p>11. <u>그 밖에 「관세법」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<u>물품수신인 성명·물품수신인 식별부호·거래코드·공급망 정보·물품수신인 주소·물품수신인</u> 전화번호 등이 -----</p> <p>11. <u>「전파법 시행령」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</u></p> <p>12. <u>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</u></p>	<p>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주요 기재사항의 정확한 작성 필요 • 목록통관 배제대상을 명확
<p>[별표 3] 통관목록 작성요령 : <u>‘별첨 1’</u></p>	<p>[별표 3] 통관목록 작성요령 : <u>‘별첨 2’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성요령 전면 개정에 따라 ‘별첨’으로 첨부

현 행		개 정 안	비 고								
[별지 제1호서식] 특송업체 등록,갱신 신청서		[별지 제1호서식] 특송업체 등록,갱신 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4조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변경사항 반영 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2">첨부서류</td> <td>신청인 제출서류</td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사본</u>(항공화물 특송업체) <u>2.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</u>(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 특송업체) <u>3. 사업자등록증 사본</u> <p><신 설></p> </td> </tr> <tr> <td>담당공무원 확인사항</td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생략) <u>2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에 한함) 1부</u> </td> </tr> </table>	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사본</u>(항공화물 특송업체) <u>2.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</u>(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 특송업체) <u>3. 사업자등록증 사본</u> <p><신 설></p>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생략) <u>2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에 한함) 1부</u> 	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2">첨부서류</td> <td>신청인 제출서류</td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사본</u> (-----) <u>2.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</u> (-----) <u>3.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</u> <u>4. 납세증명서</u> </td> </tr> <tr> <td>담당공무원 확인사항</td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/td> </tr> </table>	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사본</u> (-----) <u>2.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</u> (-----) <u>3.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</u> <u>4. 납세증명서</u> 	담당공무원 확인사항
첨부서류		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사본</u>(항공화물 특송업체) <u>2.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</u>(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 특송업체) <u>3. 사업자등록증 사본</u> <p><신 설></p>								
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생략) <u>2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에 한함) 1부</u> 									
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사본</u> (-----) <u>2.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</u> (-----) <u>3.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</u> <u>4. 납세증명서</u> 									
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									
[별지 제4호서식] 통관목록 : <u>‘별첨 3’</u>		[별지 제4호서식] 통관목록 : <u>‘별첨 4’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관목록 전면 개정 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비 고				
		따라 ‘별첨’으로 서식 첨부				
<p>[별지 제4호서식] 자세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(변경) 계획서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596 869 769"> <tr> <td>처리기간</td> </tr> <tr> <td>60일</td> </tr> </table> <p>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체 시설 <u>운영</u> 통관절차수행(변경)계획서를 제출합니다.</p>	처리기간	60일	<p>[별지 제4호서식] 자세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(변경) 계획서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3 596 1608 769"> <tr> <td>처리기간</td> </tr> <tr> <td>30일</td> </tr> </table> <p>----- ----- 시설 <u>이용</u> ----- -----</p>	처리기간	30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4조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변경사항 반영
처리기간						
60일						
처리기간						
30일						
<p>[별지 제7호서식] 배송지정보</p> <p>12. 최초제출(수입신고) <u>수하인</u>(납세의무자) 주소</p>	<p>[별지 제7호서식] 배송지정보</p> <p>12. ----- <u>물품수신인</u> -----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 시행('21.1.1., 용어 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 			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13. 실제 배송 <u>수하인</u>(수입신고 납세의 무자) 주소</p>	<p>13. ----- <u>물품수신인</u>----- -----</p>	
<p>[별지 제8호서식] 목록통관 특송물품 자료 제출요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견품</u> 또는 <u>견품 카탈로그</u>, <u>견품</u>사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구체적으로 <u>명기</u>)</p>	<p>[별지 제8호서식] 목록통관 특송물품 자료 제출요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견본품</u> 또는 <u>견본품 카탈로그</u>, <u>견본품</u>사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구체적으로 <u>작성</u>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시행('21.1.1., 용어 정비)에 따른 후속 조치 • 법제처 주관 「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」 의견 반영치
<p>[별지 제12호서식] 임시개청 신청(통보)서</p> <p>(2) 기재란의 해당 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<u>공란</u>으로 둘 수 있으나 ② 특송업체부호 ⑤ House B/L 건수 ⑦</p>	<p>[별지 제8호서식] 임시개청 신청(통보)서</p> <p>(2) 기재란의 해당 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<u>빈칸</u>으로 둘 수 있으나 ② 특송업체부호 ⑤ House B/L 건수 ⑦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제처 주관 「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」 의견 반영치

현행	개정안	비고
장치(예정)장소는 기재	장치(예정)장소는 기재	

“별첨 1” : (현행) [별표 3] 통관목록 작성요령

통관목록 작성요령

항 목	작 성 요 령	작 성 예	조건
①특송업체명	○ 특송업체 부호 기재	- AE0004	필수
②선박편명(항공편명)	○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	- KE1098/046W	필수
③적출국(항) (Port of loading)	○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,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	- USLGB/NYC	필수
④Master B/L no. - Master B/L 일련번호 - Master B/L 번호	○ 선사/항공사 발행 Master B/L 관련사항 기재 - 적하목록상의 Master B/L 일련번호 기재 - Master B/L 번호 기재	- 9999 - EFGH96100123AB01 /18010012301	필수
⑤입항일자(Date of Arrival)	○ 선박/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	- 20040101	필수
⑥House B/L no. - House B/L 일련번호 - HouseB/L 번호	○ House B/L 관련사항 기재 - House B/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- House B/L 번호 기재	- 999 - ABCD76527023AB01	선택
⑦송하인 성명 (Shipper Name)	○ House B/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○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,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		필수
⑧송하인 주소(Address)	○ 동,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	- 5-2, NISHI-KANDA 3-CHOME, CHIYODA FIRST BUILDING, TOKYO	선택
⑨수하인 성명 (Consignee Name)	○ House B/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○ 수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,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※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홍길동 - HONGGILDONG	필수
⑩수하인 전화번호 (Phone Number)	○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※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됨	- 01012341234 - 0421231234	필수
⑪수하인 주소(Address)	○ 동,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※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길 111동 111호 - XX, OLYMPIC-RO XX-DA-GIL, SONGPA-GU 111DONG 111HO, SEOUL	필수
⑫품명 (Description)	○ 품명을 정확히 기재(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기재) ○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※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(예, SAMPLE 등)을 기재하면 안됨	- WOMAN SHIRT	필수
⑬규격(Standards)	○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	품명에 해당하는 정 확 한 규 격 을 기 재	선택
⑭포장개수(carton)	○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	- 1	필수
⑮수량(piece)	○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	- 7	필수
⑯중량(kgs)	○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○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	- 5.1	필수
⑰물품가격(US\$)	○ 물품가격을 미화(US Dollar)로 기재(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) -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, 운송료, 보험료를 포함하되,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-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	- 75	필수

항 목	작 성 요 령	작 성 예	조건
	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※ (예시)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		
⑱ 발송국(Origin)	○ 물품이 수집(pick-up)된 국가의 국가부호(ISO코드) 기재	- JP	필수
⑲ 용도구분(1:개인, 2: 회사)	○ 물품의 용도를 기재 - 개인물품은 1, 회사용품은 2	- 1	필수
⑳ 거래코드	○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- 전자상거래물품 : A - 개인 일반물품 : D - 상용건품 : E - 상업서류 : F (⑲항목이 '1'인 경우 'A' 또는 'D' 입력, '2'인 경우 'E' 또는 'F' 입력) ※ 상용건품의 범의 제품 전체의 디자인·성능·성분·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·주문(상당)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, 건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,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(건본이라는 명확한 표시등)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. 다만,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(예 : 수산물)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·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건품 인정여부를 판단	- A	필수
㉑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	○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판매업체와 대행업체(구매·배송 등)의 인터넷 주소를 병행하여 기재	- WWW.AMAZON.COM (WWW.MALLTAIL.COM)	선택
㉒ 전자상거래업체 신고(인증) 번호	○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	- 04008209	선택
㉓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	○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(영문부호 4자리) 기재	- SYEC	선택
㉔ 세관기재란	○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,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		-
㉕ 우편번호(Zip Code)	○ 수하인 우편번호 기재	- 12345	선택
㉖ HS 2단위 (HS Code)	○ HS 2단위 코드 기재(복수 품명인 경우 대표품명의 품목코드 기재)	- 61	필수
㉗ 수하인 식별부호	○ 수하인 고유부호 등 기재 - 개인통관고유부호 : 가 - 생년월일 : 나 - 외국인등록번호 : 마 - 여권번호 : 바 (⑲항목이 '1' 이고 ⑳항목이 'A' 인 경우, '가' 입력, ⑲항목이 '1' 이고 ⑳항목이 'D'인 경우, '가' 또는 '나' 입력) ※ 외국인인 경우는 '마' 또는 '바'도 입력 가능	- P111234567899 / 20181231	필수
	- 통관고유부호 : 다 - 사업자등록번호 : 라 (⑲항목이 '2'이고 ⑳항목이 'E' 또는 'F'인 경우, '다' 또는 '라' 입력)	- 갑을병정1981017 / 1235678900	선택
㉘ 송하인 전화번호 (Phone Number)	○ 송하인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연속 기재	- 234567890	선택
㉙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	○ 세관에서 발급받은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	- 040온라인1123	선택

“별첨 2” : (개정안) [별표 3] 통관목록 작성요령

통관목록 작성요령

항 목	작 성 요 령	작 성 예	조 건
①특송업체명	○ 특송업체 부호 기재	- AE0004	필수
②선박편명(항공편명)	○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	- KE1098/046W	필수
③적출국(항) (Port of loading)	○ 해상운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, 항공운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	- USLGB/NYC	필수
④Master B/L no. - Master B/L 일련번호 - Master B/L 번호	○ 선사/항공사 발행 Master B/L 관련사항 기재 - 적재화물목록상의 Master B/L 일련번호 기재 - Master B/L 번호 기재	- 9999 - EFGH96100123AB01/18010012301	필수
⑤입항일자(Date of Arrival)	○ 선박/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	- 20040101	필수
⑥House B/L no. - House B/L 일련번호 - HouseB/L 번호	○ House B/L 관련사항 기재 - House B/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- House B/L 번호 기재	- 999 - ABCD76527023AB01	선택
⑨물품수신인 성명 (Consignee Name)	○ House B/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○ 물품수신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,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※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(갱신)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 발급(갱신) 신청시 기재한 성명으로 기재(예 한글로 기재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)	- 홍길동 - HONGGILDONG	필수
⑩물품수신인 전화번호 (Phone Number)	○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※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되며,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(갱신)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호 발급(갱신)신청시 기재한 물품수신인의 실제 전화번호로 기재	- 01012341234 - 0421231234	필수
⑪물품수신인 주소(Address)	○ 동,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※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	-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길 111동 111호 - XX, OLYMPIC-RO XX-DA-GIL, SONGPA-GU 111DONG 111HO, SEOUL	필수
⑫품명 (Description)	○ 품명을 정확히 기재(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) ○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라벨 구분 기재 ※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(예, SAMPLE 등)을 기재하면 안됨	- WOMAN SHIRT	필수
⑬규격(Standards)	○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	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	선택
⑭포장개수(carton)	○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	- 1	필수
⑮수량(piece)	○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	- 7	필수
⑯중량(kgs)	○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○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	- 5.1	필수
⑰물품가격(US\$)	○ 물품가격을 미화(US Dollar)로 기재(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) -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, 운송료, 보험료를 포함하되,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-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※ (예시)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	- 75	필수
⑱발송국(Origin)	○ 물품이 수집(pick-up)된 국가의 국가부호(ISO코드) 기재	- JP	필수
⑲용도구분(1:개인, 2: 회사)	○ 물품의 용도를 기재 - 개인물품은 1, 회사용품은 2	- 1	필수
⑳거래코드	○ 거래유형별 코드를 기재 - 전자상거래물품 : A - 개인 일반물품 : D - 상업용 견본품 : E - 상업서류 : F (⑲항목이 '1'인 경우 'A' 또는 'D' 입력, '2'인 경우 'E' 또는 'F' 입력) ※ 상업용 견본품의 범의 제품 전체의 디자인·성능·성분·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·주문(상담)에	- A	필수

항 목	작 성 요 령	작 성 예	조건	
	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, 견본품 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,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(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등)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. 다만,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(예 : 수산물)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·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본품 인정여부를 판단			
㉓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	○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(영문부호 4자리) 기재	- SYEC	선택	
㉔ 세관기재란	○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,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		-	
㉕ 우편번호(Zip Code)	○ 물품수신인 우편번호 기재	- 12345	선택	
㉖ HS Code	○ HS 2단위 코드 기재(복수 품명인 경우 대표품명의 품목코드 기재) - ㉔항목이 'A' 인 경우, HS 6단위 코드 기재	- 61 - 610413	필수	
㉗ 물품수신인 식별부호	○ 물품수신인 고유부호 등 기재 - 개인통관고유부호 : 가 - 생년월일 : 나 - 외국인등록번호 : 마 - 여권번호 : 바 (㉑항목이 '1' 이고 ㉔항목이 'A' 인 경우, '가' 입력, ㉑항목이 '1' 이고 ㉔항목이 'D'인 경우, '가' 또는 '나' 입력) ※ 외국인인 경우는 '마' 또는 '바'도 입력 가능	- P11234567899 / 20181231	필수	
	- 통관고유부호 : 다 - 사업자등록번호 : 라 (㉑항목이 '2'이고 ㉔항목이 'E' 또는 'F'인 경우, '다' 또는 '라' 입력)	- 갑을병정1981017 / 1235678900	선택	
※ ㉔항목이 'D', 'E', 'F'인 경우 기재	㉗ 물품발송인 성명 (Shipper Name)	○ House B/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○ 물품발송인 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,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		필수
	㉘ 물품발송인 주소(Address)	○ 동,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	- 5-2, NISHI-KANDA 3-CHOME, CHIYODA FIRST BUILDING, TOKYO	선택
	㉙ 물품발송인 전화번호 (Phone Number)	○ 물품발송인 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연속 기재	- 234567890	선택
※ ㉔항목이 'A' 인 경우 '공급망 정보' 기재	㉚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	○ 판매업체와 대행업체(구매·배송 등)의 인터넷 주소를 병행하여 기재	- WWW.AMAZON.COM (WWW.MALLTAIL.COM)	필수
	㉛ 전자상거래 유형	○ 개인인 화주의 해외직접구매 유형과 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사이트 여부 기재 -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·배송(입점 판매) : A -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·배송(자체 사이트 운영) : B - 구매대행(입점 판매) : C - 구매대행(자체 사이트 운영) : D - 배송대행 : E	- A	필수
	㉜ 판매중개자 - 상호 명 - 부호	○ 통신판매중개자 관련사항 기재 - 통신판매중개자 상호 명을 기재 -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기재 ※ ㉔항목이 'A', 'C' 인 경우 기재	- 온라인마켓(주) - 040온라인1123	필수 선택
	㉝ 구매·배송대행업자 - 상호 명 - 부호	○ 구매·배송대행업자 관련사항 기재 - 구매·배송대행업자 상호 명을 기재 -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가 있는 경우와 법 제 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등록 대상으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기재 ※ ㉔항목이 'C', 'D', 'E'인 경우 기재	- 대행업자 - 040대행업자1123	필수 선택
	㉞ 해외 판매자 - 상호 명 - 부호	○ 해외 판매자 관련사항 기재 - 해외 판매자 상호 명을 기재 -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기재	- 아마존 - 040아마존1123	필수 선택
	㉟ 주문번호	○ 주문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고유 주문번호를 기재	- 12345	선택

“별첨 3” : (현행) [별지 제4호서식] 통관목록

(별지 제4호서식)

통 관 목 록

제출일자 :

제출일련번호

1. 특송업체명 2. 선박편명(항공편명) 3. 적출국(항)(Port of loading) 4. Master B/L No 5. 입항일자(Date of arrival)
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/---/---

6.House B/L No.	7.송하인 성명 Shipper Name	8. 송하인주소 Address	12. 품 명 Description	14.포장갯수 carton	16.중 량 kgs	18.발송국 Origin	20.거래코드 (A:전자상거래,D:개인일반, E:상용견품, F:상업서류)	23.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
	28. 송하인전화번호 Phone No.							
	9.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	11. 수하인주소 Address	13. 규 격 standards	15.수 량 piece	17.물품가격 (US\$)	19.용도구분 (1: 개인 2 화사)	21.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	29.구매대행업 등록부호
	10.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.	25.수하인우편번호 Zip Code						

297mm×210mm 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“별첨 4” : (개정안) [별지 제4호서식] 통관목록

(별지 제4호서식)

통 관 목 록

제출일자 :

제출일련번호

1. 특송업체명 2. 선박편명(항공편명) 3. 적출국(항)(Port of loading) 4. Master B/L No 5. 입항일자(Date of arrival)
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/---/---

20. 거래코드 (A 개인 전자상거래물품)	9. 물품수신인 성명 Consignee Name	11. 물품수신인 주소 Address	12. 품 명 Description	14. 포장갯수 carton	16. 중 량 kgs	18. 발송국 Origin	21.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	23. 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
			13. 규 격 standards	15. 수 량 piece	17. 물품가격 (US\$)	19. 용도구분 (1: 개인 2: 회사)	22. 전자상거래 유형	24. 세 관 기 재 란
6. House B/L No.	10.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Phone No.	25. 물품수신인 우편번호 Zip Code				26. HS Code		
			30. 구매·배송대행업자					
			31. 해외 판매자					
			32. 주문번호					

297mm×210mm 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통 관 목 록

제출일자 :

제출일련번호

1. 특송업체명 2. 선박편명(항공편명) 3. 적출국(항)(Port of loading) 4. Master B/L No 5. 입항일자(Date of arrival)
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/---/---

20. 거래코드 (D. 개인 일반물품 E. 상업용 견본품 F. 상업서류)	7.물품발송인 성명 Shipper Name	8. 물품발송인 주소 Address	12. 품 명 Description	14.포장갯수 carton	16.중 량 kgs	18.발송국 Origin	23.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
	28. 물품발송인 전화번호 Phone No.						
6.House B/L No.	9.물품수신인 성명 Consignee Name	11. 물품수신인 주소 Address	13. 규 격 standards	15.수 량 piece	17.물품가격 (US\$)	19.용도구분 (1: 개인 2 회사)	24.세관기재란
	10.물품수신인 전화번호 Phone No.	25.물품수신인 우편번호 Zip Code		26. HS Code		27.물품수신인 식별부호 (가 : 개인통관고유부호, 나 : 생년월일, 다 : 통관고유부호, 라 : 사업자번호, 마 : 외국인등록번호, 바 : 여권번호)	

297mm×210mm 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